

◎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4-78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7월 18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정보통신망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

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50조의4(정보 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2. 행정처분대상 : 최영 등 4건

3. 게재(게시)기간 : 2024. 7. 18. ~ 8. 1.(14일)

4.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 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

※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
5. 의견제출장소 :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,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
 (☎ 02-6735-8131, 팩스 : 02-6735-8144 / E-mail : cuma@korea.kr)

행정처분(예정) 대상자

번호	대상자	생년월일/법 인등록번호	고지주소	법 령 위 반 사 항	과태료 금액(원)	스팸URL 전화번호	광고 내용
1	최영	1966.0.28.	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삼1로 00	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	7,500,000	18**-***75	부동산
2	주식회사 아이엔지	110111- 8645511	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00	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	7,500,000	031-***-5812	부동산
3	김태연	1973.0.06.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00	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, 제4항, 제6항	7,500,000	031-***-8733	헬스
4	박주성	1985.0.17.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00	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, 제4항	7,500,000	0504-***-8517	지게차